

농촌 다문화가족의 자립인식 수준과 지원 요구*

양순미**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촌환경자원과

국문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농촌 다문화가족의 자립인식 수준과, 자립을 위한 지원요구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 다문화가족의 자립인식 수준은 정보화영역에서 가장 낮았고, 사회심리관계영역에서 가장 높았다. 둘째, 사회보장 수혜 등 생활특성에 따라 농촌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자립지원 요구를 카이자승검정한 결과, 의료보장을 받거나 또는 자녀교육 및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가족은 생활비 보조에 대한 요구가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반면 의료보장을 받지 않거나 자녀교육 및 노후준비를 하는 가족은 농산물 판매교육, 농업기술교육, 창업지원에 대한 요구가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셋째, 농촌 다문화가족의 PC보유율은 도시가족 보다 낮으며, 사회보장 수혜 등 생활특성에 따른 PC보유율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넷째, 사회보장 수혜 등 생활특성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교육 또는 사회적 지원 요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요구가 다문화가족 전반을 포괄하는 보편성을 지님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농촌 다문화가족에 대한 자립지원은 생활특성별, 영역별로 차별적이거나 통합적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농촌 다문화가족의 자립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질 것이다.

주요어: 농촌, 다문화가족, 자립

* 본 연구는 2011-2012년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연구과제(PJ90706602)의 일부임

** 교신저자(양순미) 전화: 031-290-0286; email: ysm@korea.kr
441-707) 수원시 서둔동 250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1. 문제제기

자립은 단지 경제적인 빈곤의 차원에서 인식되는 범주를 넘어서서 사회심리 등 보다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차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한번 상실했던 자기 자신을 다시 찾아 인생을 활기차게 살아가기 위한 제반의 활동을 자립이라 칭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자립은 어느 특정 계층이나 범주에만 국한되는 발달 과정이 아니다. 누구든 생애주기를 통해 경험할 수 있고 과업을 달성해야만 하는 생애주기적 발달과정이라 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도 이러한 맥락에서 예외일 수 없다. 특히 저출산율을 완화하고 고령화를 지연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는(동아일보, 2012) 농촌 다문화가족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유지·견인해 가는 핵심계층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자립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보건복지가족부 등(2010)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 가구의 25.2%가 월평균 100만원 미만의 소득 수준을 가지며 상당 수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이 20~30대의 연령층에 해당되지만 저소득층으로서 생활기반 및 수준이 낮고 취약하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기타 사회수당의 적용만으로 이들의 빈곤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자칫 무분별한 물적 복지수혜정책이 이들을 앞으로 40~50년 동안 복지수혜 그늘에서 의존지향적(依存指向的)인 생활을 해야 하는 위치로 전락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들의 자라나는 2세대 아이들에게는 불필요한 수치심을 유발하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를 비롯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의존지향적(依存指向的)인 복지제도보다 자립지향적(自立指向的)인 복지제도를 개발·적용함으로써 이들이 장기적으로 자립하며 인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양순미, 2006a). 즉

이들을 위한 최선의 복지적 지원은 자발적으로 생활을 개선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 및 역량을 북돋아 주는 것이며, 이를 통해 창의적이고 독립적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의 자립 수준 및 자립에 필요한 요구를 분석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자립의 수준을 분석하거나 자립에 관련한 요구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의 다문화가족에 적합한 개념 및 구성영역을 설정하여 그들의 자립 인식 수준 및 지원 요구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몇가지 정책적 함의를 제언하고자 하였다.

2. 선행연구 고찰

2.1. 자립의 개념

일반적으로 자립은 '남에게 예속되거나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선다,'는 의미를 가지나 이러한 사전적인 의미 외에도 해석의 초점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Pearce, Brooks, & Quttz(1997)는 '자립능력'에 초점을 두고, 자립을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것' 또는 '기본적인 복지 욕구 간의 갈등을 야기하지 않는 상태'로 정의했다. 허태현(2005)은 '실직상태에 있거나 극히 불안정한 생계수단을 가진 사람들이 자활 사업 참여를 통해 취업이나 창업의 기회를 갖고 이를 통해 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한편 자립은 결과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독립적이고 안정된 삶의 의미로 정의되기도 한다. Johnes(1993)는 자립생활에 대해 '자립적인 자아와 권리

를 가진 자립주체로서 개인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활동까지를 포함한 모든 생활'이라고 정의하며 '자립'은 '전적인 의사결정에의 참여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조정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반해 자립의지는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독립하여 정당한 지위에 서고자 하는 자기 발견적 의욕 또는 욕구를 의미한다(허태현, 2005). 오혜경(1998)은 자립의지를 스스로 지원 가능한 것과 같은 자신감의 개념으로 설명하였으며, 최종희(2010)에 의하면 자립의지는 자신감, 자아통제, 근로의욕으로 구성된다. 자립은 자활 또는 재활의 개념과도 일부 혼용되어 사용된다. 그러나 여러 선행연구들은 이의 개념들을 차별적으로 정의한다. 박경숙 & 박능후(2001)는 '자립'에 대해 재활동단, 1) 자활동단, 2) 자활동단을 거쳐 자립에 이르게 되는 즉, 자활의 경제적·심리적 안정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궁극적인 복지이론의 탈피와 안정된 삶의 질에 도달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립을 농업·취업·창업활동 등 생산활동 참여를 통해 경제, 정보화, 주거, 사회심리관계영역에서 독립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성취할 수 있는 역량으로 정의하였다.

2.2. 자립의 구성 요소

자립을 주제로 하는 여러 선행연구들 중 일부는 경제 등 특정영역에 국한하여 접근하는가 하면 일부는 다차원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예를 들

-
- 1) 재활은 육체적·심리적으로 노동능력과 의지를 상실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고용노동부, 2000)
 - 2) 자활은 실직상태에 있거나 극히 불안정한 생계수단을 가진 사람들에게 취업 내지는 창업기회 제공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을 말한다(고용노동부, 2000)

면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임선희, 2010)와, 경제적 자립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새터민 정책개선 에 관한 연구(이양호, 2009)에서는 자립을 경제적 영역에 제한하여 접근하였다. 타니구치아키히로 & 타케다야스하루(1999)는 자립의 구성요인을 신변·정신적·경제적·주거환경·사회적 영역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이상록(2007)은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정보적 자립으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자립이나 기타 사회정책의 목표 중 하나는 그 나라 국민들에게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안정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데 있다는 주장(George & Wilding, 1984)에 비추어 본 연구에서는 농촌 다문화가족의 자립 구성 영역을 경제적 차원, 정보화, 주거환경, 사회심리관계 영역으로 다차원적으로 구성하여 접근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립의 구성요소를 이와 같이 네 가지로 분류한 이유와 이들 하위영역들의 주요개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오늘날 다문화 가족의 상당수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제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이들의 대부분은 정부 지원금이나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고 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할 때, 개인은 종속적인 삶을 살게 된다. 선택권과 결정권이 없는 이러한 삶의 방식은 개인의 독립성, 주체성을 저해하고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이다. 경제적 자립에 대한 정의로 Hawkins(2002)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더 이상 복지 급여를 받지 않고 노동과 소득 측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중산층으로 진입하기 시작한 상태', '스스로의 취업 노력에 의한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국가의 보호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고 하였다. Freeman(1997)은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 기술, 능력 한도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최소한의 경제적 욕구를 충족하는 상태'라고 하였다(이형하 & 조문탁, 2004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자립을 근로활동을 통해,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에 필요한 재화를 얻는 상

태로 정의한다.

둘째, 다문화가족은 대인관계나 인적관계망이 취약하다. 대인관계에 수반되는 근본적인 도구는 의사소통으로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어 구사능력의 한계로 전반적으로 대인관계나 인적관계망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의사소통상의 제약은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무력감을 유발하며 결과적으로 약하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게 된다. 사회적 자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화로운 행동으로 대인관계에서나 주어진 사회 환경에서 만족할 만한 관계를 맺고 사회적 욕구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을 환경에 맞추거나 환경을 변화시키는 '사회적응능력'과 사회인으로 기능하게 하는 '사회활동능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능력은 다른 사람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지관계를 맺고 상호 협력하며 살아가는 능력으로서 친구와 가족과의 관계, 사회적 대인 관계나 이러한 관계를 맺는 능력을 가리키는 '대인관계능력'과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비판과 칭찬을 수용하고, 관계 확장을 통해 자원을 습득하고 활용하는 능력인 '사회적 관계능력'을 포함한다(김정연, 하지선, & 김인숙, 2011).

셋째, 오늘날은 정보 격차가 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정보화 시대이다. 정보화 시대에는 정보의 유무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만큼 정보를 얻고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정보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정보에 대한 접근 수단을 확보한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정보운용능력을 소유하지 못한 정보화 취약계층의 소외현상은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경우 여성결혼이민자의 연령대가 대부분 20~30대에 속하고, 2세대 자녀들이 동시에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계층간의 격차를 좁혀가는 차원에서 정보화 자립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보화 자립은 일반적으로 기초적인 컴퓨터와 인터넷 활용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고, 이를 통해 정보 생활화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이자성, 2011). 정보화 자립을 위해서는 정보기기 및 매체를 다루는 기술을 숙달하는 것, 즉 정보화 능력이 필요하다. 즉 '인터넷 정보 검색', '인터넷 쇼핑', '인터넷 활용 공공기관 홈페이지 방문', '인터넷 메일 사용' 등을 정보화 능력의 필수 항목으로 들 수 있다.

넷째, 주거환경은 인간이 경험하는 다양한 공간 환경 중 가장 오랫동안 유지되며 개인의 삶의 축이 되고, 가족의 삶을 집결시켜 주는 곳이다(이연숙, 1999). 주거환경은 주생활(住生活)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환경으로 주거의 적절한 규모, 프라이버시의 확보, 충분한 침실, 적절한 급배수(給排水), 폐기물의 위생적 처리, 세탁과 욕실시설, 조리과 식사시설, 식품 등의 저장시설, 실온조절, 방습, 방음, 환기와 맑은 실내공기의 유지, 적절한 채광과 조명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주택을 비롯하여 상수도·하수도, 폐기물 처리, 맑은 공기, 경찰과 소방, 교통과 여러 가지 사회적 시설, 각종 재해로부터의 안전 등 경제·사회·문화적 환경 전반을 포괄한다. 즉 주거 환경은 한 가족의 생활을 담는 그릇이며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농촌의 다문화 가족들은 상당 수가 시부모 혹은 시형제가 거주하는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며, 2~4명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공간도 제약되어 있다. 여기에 더하여 주거시설의 낙후, 시설의 미비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거나 생활 여건상 사생활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다문화가족이 주거생활공간을 쾌적하고 여유있게 유지한다는 것은 삶에 대한 애착 및 의욕과 직결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의 농촌 남성과 결혼해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출신국 등의 여성결혼이민자와 남편이다. 조사 대상국가인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는 통계청의 자료³⁾를 참고하여 출신국별 여성결혼이민자의 상대적 비율이 높은 순서를 기준으로 선정한 것이다.

조사는 2011년 8월 22일부터 9월 16일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계통추출에 의해 선정된 전국 187개 농촌생활지표 조사마을중 재계통추출한 전국 8개도 42개 시·군⁴⁾ 42개 마을과 인근 마을을 중심으로 총 391호 782명이 조사되었다.

이들에 대한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자료를 이용해서 42개 마을에 대한 농촌생활지표조사 현지 모니터들이 해당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으며 필리핀인 결혼이민자, 베트남인 결혼이민자, 캄보디아인 결혼이민자는 각각 영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로 번역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기록하는 식으로 조사하였다.

3) 2011년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01년 부터 2011년 사이에 혼인한 여성결혼이민자는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순서로 많으며 이들 5개국에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86.8%에 달한다.

4) 연천 등 경기·강원지역 9개 시군, 충주 등 충청지역 11개 시군, 익산 등 전라지역 12개 시군, 의성 등 경상지역 10개 시군이다.

3.2. 척도

3.2.1. 자립 척도

Pearce, Brooks, & Quttz(1997)는 '자립능력'에 초점을 두고, 자립을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것' 또는 '기본적인 복지 욕구 간의 갈등을 야기하지 않는 상태'로 정의했다. 허태현(2005)은 '실직상태에 있거나 극히 불안정한 생계수단을 가진 사람들이 자활 사업 참여를 통해 취업이나 창업의 기회를 갖고 이를 통해 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립을 농업·취업·창업활동 등 생산활동에 참여하면서 독립적으로 안정된 생활여건을 성취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여 접근한다.

농촌 다문화가족의 자립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일본 Human Care Association의 자립생활지표를 토대로 국립재활원(김민정, 2002)에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자립 영역으로 구성된 척도, 국립재활원의 척도를 재구성하여 신체적·심리적·사회적·정보화·경제적 자립 영역으로 편성한 이상록(2007)의 척도, 타니구치야키히로 & 타케다야스하루(1999)의 자립의 하위영역 및 개념을 인용하여 총 25문항으로 자립측정 도구를 구성하였다. 1차적으로 구성된 척도는 Principal Axis Factoring에 의해 oblique rotation을 적용하여 2회 회전한 후 요인 적재량이 .40 이상인 항목만 선정하여 최종 4개 영역(정보화·경제·사회심리관계·주거환경) 20문항으로 완성하였다. 최종적으로 각 문항의 요인적재량은 .40~.82 수준이었고 정보화 영역의 eigenvalue는 3.53, 경제영역은 3.19, 사회심리 및 관계영역은 2.49, 주거환경영역은 1.43이었다.

각 항목에 대한 응답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 5점 Likert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영역별 자립역량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척도의 신뢰도에 있어서 정보화 영역은 Cronbach's $\alpha = .88$, 경제적 영역은 Cronbach's $\alpha = .88$, 사회심리관계 영역의 Cronbach's $\alpha = .78$, 주거환경 영역의 Cronbach's $\alpha = .85$, 자립역량평가 척도의 총체적인 Cronbach's $\alpha = .85$ 로써 비교적 높은 수준의 내적일치도를 나타내었다.

3.2.2. 자립 지원 요구 및 사회인구학적 변인 관련 척도

농업활동 관련 정책인지 및 지원 요구,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및 지원 요구, 주거환경 관련 정책 인지 및 지원 요구 등은 양순미(2008)와 최명숙(2005) 등의 척도를 이용 또는 응용하여 명목형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농업활동 관련 정책 인지 및 지원 요구, 주거환경 관련 정책인지 및 지원 요구 등에 대한 문항은 남편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지에만 포함하여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결혼이민자인 아내의 설문지에는 이의 문항을 포함하지 않았다.

생활수준을 측정하는 척도는 하하(1)에서 상상(6)까지 6점 Likert로 구성된 양순미(2001)의 척도를 이용하였다. 기타 연령, 학력, 동거하는 가족원 등은 양순미(2001)의 척도를 이용하여 개방형으로 질문한 뒤 분석과정에서 학력은 초등학교졸에서 대졸 수준까지 연속적으로 재배열하고 가족원들은 가족형태별로 재조합하여 활용하였다.

3.3. 자료의 분석

총 391호 782명이 조사되었지만 미응답이 많아 분석자료로 활용하기에 부적절하거나 부부가 쌍으로 조사되지 않은 자료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78호 756명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분석과정에서 다문화가족의 자립 수준은 부부가 인지한 자료를 통합하여 가족점수화한 뒤에 이것을 다시 2로 나누어서 얻어진 2차적인 데이터

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는 가족구성원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을 통하여 가족변인을 측정하기 보다 다수의 구성원들을 연구에 참여시킴으로써 보다 풍부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얻는다는 주장(유계숙, 1996)에 근거한 것으로써, <표 1>과 같이 다문화가족의 남편과 아내가 인식한 자립수준의 상관성이 $r=.52$ 수준으로 의미있게 관련되어 있어서 위의 주장에 비추어 자립변인을 가족변인으로 측정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해 볼 수 있다. 또한 자립지원 요구는 개인의 지각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개인적 수준의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유계숙, 1996)으로 사료된다. 한편 다문화가족 남편의 자립인식 수준은 결혼이민여성인 아내의 자립인식 수준보다 $p=.05$ 에서 높았다(표 2).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SAS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기초통계량(빈도, %, 평균값)분석, t-test, ANOVA 분석등이 이루어졌다.

<표 1> 다문화가족의 남편과 아내가 인식한 자립 수준의 상관성
(n=378쌍 756명)

자립수준의 상관성	남편의 자립 인식수준
결혼이민여성(아내)의 자립 인식 수준	.52***

*** $p<.001$

<표 2> 다문화가족의 남편과 아내가 인식한 자립 수준의 일반적인 특성
(n=378쌍 756명)

남편의 자립인식 수준	결혼이민여성의 자립인식 수준	paired t값
M(S.D.)	M(S.D.)	2.12*
60.75(11.23)	59.58(10.77)	

* $p<.05$

4. 연구결과 및 해석

4.1. 조사대상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여성의 평균 연령은 일본 43.81세, 중국 37.43세, 필리핀 35.12세, 베트남 27.37세, 캄보디아 26.70세이었다. 남편과의 평균 연령차이는 일본이 약 5.2세로써 가장 적은 반면 캄보디아인 및 베트남인의 경우 약 17세로써 가장 컸다. 중국과 필리핀은 약 10세 차이였다. 농촌지역의 중년기 국내결혼 부부의 평균 연령차이가 약 3세이라는 점(양순미 & 정현숙, 2005; 양순미 & 유영주, 2002)을 고려해 볼 때 중국과 필리핀 다문화가족의 부부는 비교적 높은 연령 차이를 보이며,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경우 이러한 연령차이가 보다 극심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본과 필리핀 결혼이민여성의 학력은 전문대학을 중퇴한 수준으로써 고등학교를 중퇴한 수준인 한국인 남편의 학력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수준으로써 한국인 남편들의 학력 수준과 유사하거나 낮았다. 이를 농촌지역의 중년기 부부를 대상으로 아내와 남편의 평균 학력수준을 비교한 연구에 비추어 볼 때(양순미, 2001) 국제결혼을 한 한국남성들은 농촌지역의 일반 중년기 가족의 남편들과 학력수준이 유사한 반면 결혼이민여성들의 학력은 평균 중졸수준인 한국 농촌의 일반 중년기 가족의 아내들의 학력수준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결혼이민여성의 거주기간은 일본인이 가장 높은 반면 캄보디아인이 가장 낮았다(표 3).

〈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78쌍 756명)

내용 출신국가	연령		학력		결혼이민자 거주기간
	결혼이민자	남편	결혼이민자	남편	
	M(S.D.)	M(S.D.)	M(S.D.)	M(S.D.)	M(S.D.)
중국(n=83)	37.43(8.34)b	47.87(6.66)a	2.62(0.94)c	2.83(0.96)a	104.84(54.87)b
일본(n=61)	43.81(7.18)a	49.04(5.88)a	3.41(0.83)b	2.69(1.14)a	164.79(60.52)a
필리핀(n=77)	35.12(7.43)c	45.18(5.03)b	3.82(0.93)a	2.76(1.15)a	97.23(50.93)b
베트남(n=98)	27.37(4.36)d	44.56(5.50)b	2.38(0.86)dc	2.87(0.96)a	48.78(25.25)c
캄보디아(n=44)	26.70(3.40)d	44.50(5.49)b	2.19(0.63)d	2.86(0.80)a	46.64(21.19)c
계	34.02(8.87)	46.14(5.98)	2.88(1.05)	2.80(1.02)	91.06(60.32)
F값	75.88***	8.65***	43.23***	0.33	69.70***

***p<.001 # 표안의 a, b, c, d는 사후검증으로 Duncan test한결과임

4.2. 자립인식 수준

4.2.1. 출신국별 자립인식 수준

결혼이민여성들의 출신국별로 농촌 다문화가족의 자립 수준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표 4), 총체적 자립수준은 평균 61.66~58.84점으로서 결혼이민여성이 베트남인인 다문화가족이 가장 높았으나 일본인인 다문화가족은 가장 낮았다. 정보화 영역의 자립은 평균 15.51~13.39점으로서 필리핀인 다문화가족이 가장 높은 반면 캄보디아인 다문화가족이 가장 낮았다. 경제적 영역의 자립 수준은 평균 13.61~11.88점으로서 캄보디아인 다문화가족이 가장 높은 반면 일본인 다문화가족은 가장 낮았는데, 이는 결혼이민여성들이 경제적 영역의 자립수준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친정국가의 여건이 비교준거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준거는 상대적으로 한국에서 거주기간이 짧은 캄보디아나 베트남의 경우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차이는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백분위로 약 50점 수준이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경제적 자립을 백분위 70점 수준으로 밝힌 선행 결과(임선희, 2010)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사회심리 및 관계 영역의 자립 수준은 평균 27.66~25.31점으로서 중국인 다문화가족이 가장 높은 반면 필리핀인 다문화가족이 가장 낮았는데 이러한 차이는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것은 중국·일본·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의 적응 수준을 비교분석한 양순미(2006b)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써 대다수가 중국조선족 출신인 본 연구 조사대상의 중국인들이 한국생활에 언어 및 문화적 유사성으로 적응이 유리하여 상대적으로 이에 대한 이질감이 큰 필리핀보다 사회심리관계적인 자립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주거환경영역의 자립은 평균 6.74~5.69점으로서 캄보디아인 다문화가족이 가장 높고 베트남의 경우 가장 낮았다. 그러나 총체적 자립 수준, 정보화 및 주거환경영역에 있어서 출신국가별 다문화가족의 자립 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였다.

한편 하위영역별 자립 수준은 전반적으로 정보화 영역에서 가장 낮았고 이어서 경제적 영역 순서로 낮은 반면 사회심리 및 관계영역의 자립 수준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결혼이민여성의 출신국별로 본 다문화가족의 자립인식 수준

(n=378쌍 756명)

출신국	총체적 자립역량		경제적 영역		정보화 영역		사회심리 및 관계 영역		주거환경 영역	
	M (S.D.)	백분 위	M (S.D.)	백분 위	M (S.D.)	백분 위	M (S.D.)	백분 위	M (S.D.)	백분 위
중국	60.70a (9.73)	60.7	12.66bac (3.91)	50.6	14.22ba (4.74)	47.4	27.66a (3.54)	79.0	6.17ba (2.01)	61.7
일본	58.84a (10.08)	58.8	11.88c (4.37)	47.5	14.66ba (4.71)	48.9	26.45ba (3.17)	75.6	5.84b (2.18)	58.4
필리핀	58.92a (9.57)	58.9	12.11bc (3.80)	48.4	15.51a (4.68)	51.7	25.31b (3.81)	72.3	5.99b (2.16)	59.9
베트남	61.66a (8.61)	61.7	13.42ba (3.43)	53.7	15.20a (4.80)	50.7	27.35a (2.87)	78.1	5.69b (2.00)	56.9
캄보디아	60.47a (9.61)	60.5	13.61a (3.28)	54.4	13.39b (4.40)	44.6	26.73a (4.20)	76.4	6.74a (1.91)	67.4
F값	1.33		2.73*		1.92		5.59***		2.18	

* $p < .05$, *** $p < .001$ # 표안의 a, b, c, d는 사후검증으로 Duncan test한 결과임

4.2.2. 다문화가족의 생활특성에 따른 자립수준

〈표 5〉에 의하면 조사대상 농촌 다문화가족의 11.23%가 기초생활보장금을, 15.55%가 의료보장을, 14.52%가 신용불량이나 파산면제를 경험한 바 있었다. 또한 46.63%가 자녀교육 및 노후준비를 하고 있으며 57.22%가 주택개보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기초생활수급 및 의료보장 수혜 여부 등 다문화가족의 특성에 따라 자립수준을 분석한 결과(표 4), 기초생활수급 또는 의료보장 수혜 대상 다문화가족은 비수급 대상 가족 보다 총체적 자립 및 4개 하위영역의 자립수준이 모두 $P = .05 \sim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신용불량이나 파산경험이 있는 다문화가족은 그렇지 않은 가족보다

경제적 영역과 주거환경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자립수준이 낮았다. 자녀교육 및 노후준비를 하는 가족은 그렇지 않은 가족보다 총체적 자립 및 4개 하위영역의 자립 수준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주택 개보수 필요성을 인지하는 가족은 그렇지 않은 가족보다 총체적 자립, 경제적 영역, 주거환경 영역의 자립 수준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표 5> 조사대상 다문화가족의 생활특성에 따른 자립인식 수준

(n=378쌍 756명)

변인	집단(사례수)	총체적 자립역량	경제적 영역	정보화 영역	사회심리 및 관계 영역	주거환경 영역
		M.(S.D.)	M.(S.D.)	M.(S.D.)	M.(S.D.)	M.(S.D.)
기초생활 수급 여부	받음(42)	52.87(10.02)	9.85(3.60)	12.79(4.48)	25.17(4.76)	5.07(2.15)
	안받음(332)	61.08(9.11)	13.07(3.73)	14.95(4.70)	26.93(3.50)	6.13(2.04)
	t값	-5.44***	-5.29***	-2.82**	-2.32*	-3.16**
의료보장 수혜 여부	받음(58)	55.10(9.31)	10.91(4.08)	13.21(4.32)	25.61(4.73)	5.38(2.26)
	안받음(315)	61.21(9.35)	13.06(3.75)	15.04(4.73)	26.99(3.44)	6.12(2.02)
	t값	-4.58***	-3.97***	-2.75**	-2.12*	-2.52**
신용불량/ 파산면제 경험	있다(54)	59.11(8.42)	11.71(3.55)	14.94(5.24)	27.34(2.75)	5.11(2.12)
	없다(318)	60.32(9.76)	12.85(3.88)	14.63(4.62)	26.67(3.85)	6.17(2.04)
	t값	-0.86	-2.02*	0.45	1.56	-3.52***
자녀교육 및노후준비 여부	한다(173)	63.77(9.44)	14.26(3.91)	15.75(4.64)	27.37(3.54)	6.39(2.00)
	안한다(198)	57.00(8.63)	11.36(3.28)	13.85(4.64)	26.14(3.74)	5.65(2.10)
	t값	7.22***	7.77***	3.95***	3.26***	3.43***
주택개보수 필요성	필요(214)	58.86(9.08)	12.07(3.81)	14.75(4.73)	26.89(3.65)	5.15(1.95)
	불필요(160)	61.82(9.89)	13.55(3.78)	14.70(4.70)	26.45(3.69)	7.11(1.64)
	t값	-3.00**	-3.74***	0.09	1.15	-10.26***

*p<.05, **p<.01, ***p<.001

4.3. 자립지원 요구

4.3.1. 경제적 어려움 원인 및 안정을 위한 지원 요구

조사대상가족의 생활특성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표 6), 기초생활수급이나 의료보장 수혜를 받은 다문화가족은 '남편이 경제활동 안함'을 가장 높은 비율로 지적하였으며, 신용불량과산경험이 있는 다문화가족은 '신용불량 경제파탄'을, 자녀교육 및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는 다문화가족은 '자녀교육문제'를 가장 높은 비율로 지적하였다. 반면에 기초생활수급이나 의료보장 수혜를 받지 않는 가족, 신용불량 및 파산을 경험하지 않은 가족, 그리고 자녀교육 및 노후준비를 하는 가족은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으로 '농사규모적음'을 가장 높은 비율로 지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p=.001$ 또는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그러나 주택개보수 필요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조사대상가족의 생활특성에 따라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지원 요구를 분석한 결과(표 7), 의료보장수혜를 받는 가족은 생활비 보조(37.56%)에 대한 요구가 더 높은 반면 받지 않는 가족은 농산물 판매교육(16.07%), 농업기술교육(11.48%), 창업지원(8.85%)에 대한 요구가 더 높았다. 자녀교육 및 노후준비를 하는 가족도 그렇지 않는 가족 보다 농산물 판매교육(16.77%), 농업기술교육(11.98%), 창업지원(11.38%)에 대한 요구가 더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모두 $p=.001$ 또는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여부, 신용불량 및 파산 경험여부, 주택개보수 필요 여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였다. 결론적으로 기초생활이나 의료보장 수혜대상인 농촌 다문화가족은 단순 생활비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은 반면, 비 수혜대상인 다문화가족은 농산물 판매교육이나 농업기술교육 등 일할 수 있는 환경여건의 개선

을 통해 자립하고자 하는 요구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6〉 다문화가족의 남편들이 인식한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

(n=330명)

집단	남편 경제 활동 안함		아내 경제 활동 안함		일자 리 없음		농사 규모 적음		가족 원 질병		신용 불량 경제 파탄		자녀 교육		기타		계		χ ²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기초생활수급	받음	15 (37.50)	1 (2.50)	3 (7.50)	10 (25.00)	2 (5.00)	2 (5.00)	2 (5.00)	2 (5.00)	5 (12.50)	40 (12.23)	34.60 ***							
	안받음	22 (7.67)	13 (4.53)	34 (11.85)	76 (26.48)	21 (7.32)	12 (4.18)	67 (23.34)	42 (14.63)	287 (87.77)									
의료보장수혜	받음	16 (28.07)	4 (7.02)	10 (17.54)	11 (19.30)	4 (7.02)	1 (1.75)	4 (7.02)	7 (12.28)	57 (17.48)	28.16 ***								
	안받음	22 (8.18)	10 (3.72)	28 (10.41)	75 (27.88)	17 (6.32)	13 (4.83)	64 (23.79)	40 (14.87)	269 (82.52)									
신용불량파산경험	있음	8 (15.69)	1 (1.96)	7 (13.73)	12 (23.53)	3 (5.88)	13 (25.49)	5 (9.80)	2 (3.92)	51 (15.64)	73.34 ***								
	없음	30 (10.91)	13 (4.73)	31 (11.27)	73 (26.55)	20 (7.27)	1 (0.36)	63 (22.91)	44 (16.00)	275 (84.36)									
자녀교육노후준비	함	18 (13.04)	3 (2.17)	13 (9.42)	30 (21.74)	10 (7.25)	2 (1.45)	37 (26.81)	25 (18.12)	138 (42.46)	16.04 *								
	안함	20 (10.70)	11 (5.88)	24 (12.83)	54 (28.88)	13 (6.95)	12 (6.42)	31 (16.58)	22 (11.76)	187 (57.54)									
주택개보수필요	필요	21 (10.71)	6 (3.03)	28 (14.29)	53 (27.04)	14 (7.14)	12 (6.12)	36 (18.37)	26 (13.27)	196 (59.76)	10.96								
	불필요	16 (12.12)	8 (6.06)	10 (7.58)	33 (25.00)	9 (6.82)	2 (1.52)	33 (25.00)	21 (15.91)	132 (40.24)									
계		38 (11.52)	14 (4.24)	39 (11.82)	86 (26.06)	23 (6.97)	14 (4.24)	69 (20.91)	47 (14.24)	330 (100.0)	-								

*p<.05, ***p<.001

<표 7> 다문화가족의 남편들이 인식한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지원 요구

(n=365명)

집단		농산물 판매	농지지원	농업기술교육	생활비 보조	창업지원	일자리지원	기타	계	χ ²
		n(%)	n(%)	n(%)	n(%)	n(%)	n(%)	n(%)	n(%)	
기초생활수급	받음	2 (5.13)	7 (17.95)	0 (0.00)	16 (41.03)	2 (5.13)	9 (23.08)	3 (7.69)	39 (10.74)	11.67
	안받음	49 (15.12)	53 (16.36)	34 (10.49)	79 (24.38)	27 (8.33)	68 (20.99)	14 (4.32)	324 (89.26)	
의료보장수혜	받음	2 (3.57)	10 (17.86)	0 (0.00)	21 (37.56)	2 (3.57)	16 (28.57)	5 (8.93)	56 (15.51)	21.74 ***
	안받음	49 (16.07)	51 (16.72)	35 (11.48)	71 (23.28)	27 (8.85)	61 (20.00)	11 (3.61)	305 (84.49)	
신용불량과산험	있음	9 (16.98)	8 (15.09)	5 (9.43)	18 (33.96)	2 (3.77)	9 (16.98)	2 (3.77)	53 (14.68)	4.04
	없음	41 (13.31)	52 (16.88)	30 (9.74)	76 (24.68)	27 (8.77)	68 (22.08)	14 (4.55)	308 (85.32)	
자녀교육 / 노후준비	함	28 (16.77)	24 (14.37)	20 (11.98)	34 (20.36)	19 (11.38)	35 (20.96)	7 (4.19)	167 (46.39)	13.42 *
	안함	23 (11.92)	36 (18.65)	15 (7.77)	60 (31.09)	9 (4.66)	40 (20.73)	10 (5.18)	193 (53.61)	
주택개보수 필요	필요	31 (14.76)	38 (18.10)	15 (7.14)	60 (28.57)	15 (7.14)	42 (20.00)	9 (4.29)	210 (57.69)	6.12
	불필요	19 (12.34)	23 (14.94)	20 (12.99)	35 (22.73)	14 (9.09)	35 (22.73)	8 (5.19)	154 (42.31)	
계		51 (13.97)	61 (16.71)	35 (9.59)	95 (26.03)	29 (7.95)	77 (21.10)	17 (4.66)	365 (100.00)	-

*p<.05, ***p<.001

4.3.2. 정보화 관련 실태 및 지원 요구

농촌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여성들의 직업교육에 관한 지원 요구 중 ‘정보·컴퓨터 관련 교육’에 대한 지원 요구는 주택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집

단과 그렇지 않다는 집단 모두에서 각각 16.48%, 17.39%로써 ‘미용·피부 관리직’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8). 한편 조사대상 농촌 다문화가족의 81.7%가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0년 우리나라 가구주 연령대별 PC 보유율이 20대의 경우 98.3%, 30대의 경우 99.6%, 40대의 경우 97.8%의 보유율을 보인다는 보도기사⁵⁾에 준해 볼 때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결혼이민여성들의 직업교육 지원 요구 중 정보 및 컴퓨터 관련 내용에 대한 지원 요구는 전체 응답자중 16.98% 수준이었으며, 농사일에 대한 지원 요구 중 농업정보이용교육에 대한 요구는 전체응답자 중 다문화가족 남편은 6.88%, 결혼이민여성은 8.73% 수준이었다. 또한 농외소득활동을 하는데 있어 장애요인으로서 정보부족을 지적한 다문화가족 남편은 12.3%, 결혼이민여성은 9.06%이었다(표 9). 결론적으로 농촌 다문화가족 남편 및 결혼이민여성들의 정보화에 대한 인식이나 요구 수준은 낮으며, 이러한 양상이 낮은 수준의 정보화 자립을 유인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데일리 중앙 2011. 4. 26일자 보도

〈표 8〉 다문화가족 아내들의 직업교육 관련 지원 요구

(n=318명)

집단		미용, 피부 관리직	정보, 컴퓨터 관련 교육	공예 제작	요양보호사	서비스 직 에티켓	운전교육	기타	계	X ²
		n(%)	n(%)	n(%)	n(%)	n(%)	n(%)	n(%)	n(%)	
기초생활수급	받음	9 (25.00)	7 (19.44)	1 (2.78)	5 (13.89)	3 (8.33)	5 (13.89)	6 (16.67)	36 (11.46)	2.79
	안받음	84 (30.22)	46 (16.55)	8 (2.88)	38 (13.67)	27 (9.71)	19 (6.83)	56 (20.14)	278 (88.54)	
의료보장수혜	받음	11 (20.75)	12 (22.64)	1 (1.89)	9 (16.98)	3 (5.66)	7 (13.21)	10 (18.87)	53 (16.93)	7.40
	안받음	82 (31.54)	41 (15.77)	9 (3.46)	31 (11.92)	27 (10.38)	18 (6.92)	52 (20.00)	260 (83.07)	
신용불량파산경험	있음	13 (27.66)	7 (14.89)	1 (2.13)	13 (27.66)	3 (6.38)	4 (8.51)	6 (12.77)	47 (14.92)	10.8 ²
	없음	80 (29.85)	46 (17.16)	9 (3.36)	29 (10.82)	27 (10.07)	21 (7.84)	56 (20.90)	268 (85.08)	
자녀교육/노후준비	함	46 (31.72)	24 (16.55)	3 (2.07)	15 (10.34)	17 (11.72)	11 (7.59)	29 (20.00)	145 (46.62)	5.49
	안함	45 (27.11)	29 (17.47)	7 (4.22)	27 (16.27)	12 (7.23)	14 (8.43)	32 (19.28)	166 (53.38)	
주택개보수 필요	필요	53 (30.11)	29 (16.48)	4 (2.27)	29 (16.48)	10 (5.68)	19 (10.80)	32 (18.18)	176 (56.05)	12.8 ^{4*}
	불필요	40 (28.99)	24 (17.39)	5 (3.62)	14 (10.14)	19 (13.77)	6 (4.35)	30 (21.74)	138 (43.95)	
계		94 (29.56)	54 (16.98)	43 (13.52)	30 (9.43)	25 (7.86)	10 (3.14)	62 (19.51)	318 (100.00)	-

*p<.05

〈표 9〉 정보화 관련 지원 요구

(n=378쌍 756명)

농사일에 대한 지원 요구 중 농업정보이용교육 지원 요구에 대한 응답 빈도		농외소득활동 장애요인중 정보부족 요인에 대한 응답 빈도		컴퓨터 보유 여부 ⁶⁾	
집단	n(%)	집단	n(%)	집단	n(%)
다문화가족 남편(n=378)	26(6.88)	다문화가족 남편(n=333)	41(12.30)	있다	308(81.70)
결혼이민자 (n=378)	33(8.73)	결혼이민자 (n=331)	30(9.06)	없다	69(18.30)

4.3.3. 주거 실태 및 지원 요구

주택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농촌 다문화가족 중 74.18%가 정부 주택지원금을 활용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으며, 주택개보수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농촌 다문화가족 중 42.04%가 정부 주택지원금을 활용할 의사가 있다고 하여 두 집단간에 이러한 차이가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주거정책요구는 주택개보수가 필요하거나 불필요한 두 집단 모두에서 '주택보조금', '장기저리자금', '저가주택용지' 지원의 순으로 요구가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p=.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표 10).

정부주택지원금을 활용할 의사가 없는 사유를 생활실태에 따라 분석한 결과(표 11), 자녀교육 및 노후준비를 하는 집단은 '용자금 상환 능력이 없어서', '용자 대상으로 선정 받기 어려워서'의 순서로 높았고, 자녀교육 및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집단은 '용자금 상환 능력이 없어서', '용자 자격이 안 되어서'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p=.05$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6) 농촌다문화가족의 컴퓨터 보유 여부 특성은 기초생활보장 수혜 여부, 의료보장수혜 여부, 신용불량 및 파산면제경험여부, 자녀교육 및 노후준비 여부, 주택개보수 필요 여부에 따라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다문화가족 남편들이 인식한 정부주택지원금 활용의사 및 주거정책 요구
(n=378명)

집단		정부주택지원 금활용의사		계	X ²	주거정책 요구				계	X ²
		있다	없다			장기 저리 자금	저가 주택 용지	주택 보조 금	기타		
		n(%)	n(%)								
기초 생활 수급	받음	23 (54.76)	19 (45.24)	42 (11.35)	0.66	9 (23.08)	6 (15.38)	22 (56.41)	2 (5.13)	39 (10.99)	0.47
	안받음	201 (61.28)	127 (38.72)	328 (88.65)		76 (24.05)	37 (11.71)	188 (59.49)	15 (4.75)	316 (89.01)	
의료 보장 수혜	받음	36 (62.07)	22 (37.93)	58 (15.72)	0.05	12 (21.82)	8 (14.55)	31 (56.36)	4 (7.27)	55 (15.49)	1.76
	안받음	188 (60.45)	123 (39.55)	311 (84.28)		73 (24.33)	34 (11.33)	181 (60.33)	12 (4.00)	300 (84.51)	
신용 불량 파산 경험	있음	38 (70.37)	16 (29.63)	54 (14.67)	2.27	15 (28.30)	3 (5.66)	33 (62.26)	2 (3.77)	53 (14.89)	2.94
	없음	187 (59.55)	127 (40.45)	314 (85.33)		70 (23.10)	41 (13.53)	178 (58.75)	14 (4.62)	303 (85.11)	
자녀 교육 노후 준비	함	106 (61.99)	65 (38.01)	171 (46.59)	0.30	37 (22.98)	24 (14.91)	93 (57.76)	7 (4.35)	161 (45.74)	1.62
	안함	116 (59.18)	80 (40.82)	196 (53.41)		48 (25.13)	20 (10.47)	114 (59.69)	9 (4.71)	191 (54.26)	
주택 개보 수필 요	필요	158 (74.18)	55 (25.82)	213 (57.57)	39.0 8***	53 (25.73)	27 (13.11)	123 (59.71)	3 (1.46)	206 (58.03)	12.29 **
	불필요	66 (42.04)	91 (57.96)	157 (42.43)		32 (21.48)	17 (11.41)	86 (57.72)	14 (9.40)	149 (41.97)	
계		226 (60.59)	147 (39.41)	373 (100.00)	-	85 (23.74)	44 (12.29)	212 (59.22)	17 (4.75)	358 (100.00)	-

p<.01, *p<.001

〈표 11〉 다문화가족 남편들이 인식한 정부주택지원금 미활용 이유

(n=129명)

집단		용자대상 자 선정 어려움	용자자격 안됨	용자금 상환능력 없음	이혼계 획입	기타	계	X ²
		n(%)	n(%)	n(%)	n(%)	n(%)	n(%)	
기초 생활 수급	받음	0(0.00)	3(18.75)	9(56.25)	2(12.50)	2(12.50)	16(12.50)	5.22
	안받음	18(16.07)	17(15.18)	46(41.07)	6(5.36)	25(22.32)	112(87.50)	
의료 보장 수혜	받음	2(11.76)	4(25.53)	7(41.18)	3(17.65)	1(5.88)	17(13.39)	7.00
	안받음	15(13.64)	16(14.55)	48(43.64)	5(4.55)	26(23.64)	110(86.61)	
신용 불량 파산 경험	있음	1(6.67)	2(13.33)	5(33.33)	1(6.67)	6(40.00)	15(11.90)	3.40
	없음	16(14.41)	17(15.32)	49(44.14)	7(6.31)	22(19.82)	111(88.10)	
자녀 교육 노후 준비	함	13(23.64)	9(16.36)	17(30.91)	2(3.64)	14(25.45)	55(43.31)	12.79*
	안함	4(5.56)	10(13.89)	38(52.78)	6(8.33)	14(19.44)	72(56.69)	
주택 개보 수필 요	필요	6(12.24)	7(14.29)	23(46.94)	6(12.24)	7(14.29)	49(37.98)	7.24
	불필요	12(15.00)	13(16.25)	32(40.00)	2(2.50)	21(26.25)	80(62.02)	
계		18(13.95)	20(15.50)	55(42.64)	8(6.20)	28(2.71)	129(100.00)	-

*p<.05

4.3.4. 다문화 자녀교육 및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 요구

농촌 다문화가족의 생활실태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교육 및 사회적 지원 요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이러한 다문화 자녀교육 및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 요구가 계층이나 생활특성을 떠나

보편적으로 내재되는 요구특성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다문화가족 자녀교육에 대한 지원 요구는 남편과 여성결혼이민자인 아내 모두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지원'을 가장 높은 비율로 지적하였다. 이어 남편의 경우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을, 아내의 경우 '방과 후 학교에서 무료 보충교육 및 취미교육 지원'을 높게 요구하였다(표 12).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 요구에 있어서 남편은 '지역사회 내 대인관계 확대 지원'을 가장 높은 비율로 지적하였으며 이어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생활상담'순서로 높게 요구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인 아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가장 높은 비율로 지적하였으며 이어 '생활상담지원', '지역사회 내 대인관계 확대 지원' 순서로 높게 요구하였다(표 13).

〈표 12〉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교육정책 요구

(n=378쌍)

집단		다문화가족 남편					계 n(%)	χ ²	다문화가족 아내					계 n(%)	χ ²
		무료보 충취미 교육	고등학교 교무상 교육	사교육 비절감	무상 급식	기타			무료보 충취미 교육	고등학교 교무상 교육	사교 육비 절감	무상 급식	기타		
		%	%	%	%	%			%	%	%	%	%		
기초 생활 수급	받음	19.05	54.76	19.05	2.38	4.76	42 (11.54)	1.87	36.59	43.90	14.63	2.44	2.44	41 (11.82)	0.52
	안받음	21.43	49.07	24.84	2.48	2.17	322 (88.46)		37.58	39.22	16.34	2.94	3.92	306 (88.18)	
의료 보장 수혜	받음	21.05	50.88	22.81	3.51	1.75	57 (15.66)	0.54	32.14	44.64	14.29	3.57	5.36	56 (16.14)	1.80
	안받음	21.17	49.19	24.76	2.28	2.61	307 (84.34)		38.83	37.80	16.84	3.09	3.44	291 (83.86)	
신용 불량 파산 경험	있음	15.69	58.82	21.57	1.96	1.96	51 (14.09)	1.93	40.38	44.23	7.69	0.00	7.69	52 (15.07)	7.71
	없음	21.22	48.55	25.08	2.57	2.57	311 (85.91)		36.86	38.57	17.75	3.75	3.07	293 (84.93)	
자녀 교육 노후 준비	함	18.93	46.15	27.81	2.96	4.14	169 (46.69)	6.41	34.76	40.24	19.51	3.05	2.44	164 (47.26)	3.64
	안함	21.76	53.37	21.76	2.07	1.04	193 (53.31)		38.80	39.34	13.66	3.28	4.92	183 (52.74)	

주택개보수 필요	필요	19.05	52.38	23.33	3.33	1.90	210 (57.69)	3.89	38.00	37.50	17.50	3.00	4.00	200 (57.47)	1.15
	불필요	23.38	46.10	25.97	1.30	3.25	154 (42.31)		35.81	42.57	14.86	3.38	3.38	148 (42.53)	
계		20.98	49.86	24.25	2.45	2.45	367 (100.00)	-	37.43	39.43	16.29	3.14	3.71	350 (100.00)	-

〈표 13〉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 요구

(n=378쌍)

집단		다문화가족 남편					계 n(%)	χ ²	다문화가족 아내					계 n(%)	χ ²
		대인관계 확대 지원	사회인 식개선	사회차 별해소	생활상 담지원	기타			대인관계 확대 지원	사회인 식개선	사회차 별해소	생활상 담지원	기타		
		%	%	%	%	%			%	%	%	%	%		
기초생활수급	받음	26.19	23.81	14.29	30.95	4.76	42 (11.29)	7.14	29.27	19.51	12.20	24.39	14.63	41 (11.61)	6.12
	안받음	36.67	32.73	11.21	16.36	3.03	330 (88.71)		24.04	30.13	13.78	26.28	5.77	312 (88.39)	
의료보장수혜	받음	29.31	29.31	10.34	25.86	5.17	58 (15.63)	4.54	31.58	17.54	12.28	28.07	10.53	57 (16.19)	5.68
	안받음	37.70	31.63	11.50	16.61	2.56	313 (84.37)		24.07	30.51	13.56	26.10	5.76	285 (83.81)	
신용불량파산경험	있음	31.48	38.89	9.26	16.67	3.70	54 (14.59)	1.86	30.19	26.42	20.75	16.98	5.66	53 (15.01)	5.58
	없음	37.34	30.06	11.39	18.04	3.16	31 (85.41)		24.00	29.00	12.00	28.00	7.00	300 (84.99)	
자녀교육노후준비	함	35.26	33.53	12.72	14.45	4.05	173 (46.88)	3.39	27.61	30.06	12.88	25.77	3.68	163 (46.57)	5.45
	안함	36.73	30.10	10.20	20.41	2.55	196 (53.12)		22.99	27.81	13.90	25.67	9.63	187 (53.43)	
주택개보수 필요	필요	36.45	33.64	13.08	15.42	1.40	214 (57.53)	8.78	25.63	29.65	11.06	26.13	7.54	199 (56.21)	2.30
	불필요	35.44	29.11	8.86	20.89	5.70	158 (42.47)		23.87	27.74	16.13	26.45	5.81	155 (43.79)	
계		36.00	31.47	11.47	17.87	3.20	375 (100.00)	-	25.00	28.65	13.48	26.12	6.75	356 (100.00)	-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농촌의 여성결혼이민자를 비롯하여 다문화가족을 위한 자립 지향적인 정책 방안을 개발하는 선행 작업의 차원에서 이들이 인식하는 자립의 수준 및 지원 요구를 4개의 하위영역을 통해 다차원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자립수준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경험적인 선행연구(유계숙, 1996 등)의 사례를 토대로 하여 부부의 자료를 합한 뒤 나누어 가족단위 점수로 활용하였으며, 지원 요구는 개인단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 및 정책적 함의를 제언하면

첫째, 조사대상자의 생활특성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이나 의료보장 수혜를 받은 다문화가족은 '남편이 경제활동 안함'을 가장 높은 비율로 지적하였다. 반면, 기초생활수급이나 의료보장 수혜를 받지 않은 가족, 신용불량 및 파산을 경험하지 않은 가족, 그리고 자녀교육 및 노후준비를 하는 가족은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으로 '농사규모 적음'을 가장 높은 비율로 지적하였다. 또한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지원 요구를 분석한 결과, 의료보장수혜를 받거나 자녀교육 및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가족은 생활비 보조에 대한 요구가 더 높은 반면 의료보장수혜를 받지 않거나 자녀교육 및 노후준비를 하는 가족은 농산물 판매교육, 농업기술교육, 창업지원에 대한 요구가 더 높았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자립은 생활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차별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즉 기초생활이나 의료보장 수혜 대상인 농촌 다문화가족은 생활비 지원이나 일자리 지원을 통해 최저한의 기본적인 생계보장을 제공하고, 비 수혜대상인 다문화가족은 농산물 판매교육이나 농업기술교육 등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잠재역량을 개발

하거나 지원하는 차원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여건을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실례로 농업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행 농업임대제도에 따른 연령규제를 개선한다든가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를 반영해 무상으로 농지를 임대해 주거나 농기계를 임대해 주는 방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다문화테마를 자원화하여 농업 등과 융복합하는 사업모델을 개발·다양한 일자리를 창출·제공 하는 방안(양순미, 2011) 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이나 의료보장을 수혜하는 다문화가족은 그렇지 않은 다문화가족에 비해 자립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낮았다. 따라서 이들의 자립의지 및 근로의욕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생활보장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립의지를 강화하는 교육이 의무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생활특성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 원인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자녀교육 및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는 다문화가족은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이어서 '자녀교육문제'를 가장 높은 비율로 지적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교육에 대한 지원 요구는 남편과 여성결혼이민자인 아내 모두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지원'을 가장 높은 비율로 요구하였다. 이어 남편의 경우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을, 여성결혼이민자인 아내의 경우 '방과 후 학교에서 무료 보충교육 및 취미교육 지원'을 높게 요구하였다. OECD는 사회지표중 자립부분의 지표 구성 항목으로 교육비 지출을 포함하고 있으며, 교육비 지출중 사적지출 비중이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 투자전략에서 국가의 책임성이 얼마나 담보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노대명, 2010)는 점에서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평균 2~3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교육 부담 비중을 완화하고 이의 공적지출 비중을 강화하면서 이들 가족의 자녀들에게 보다 폭넓은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세대를 거쳐 대물림될 수 있는 빈곤의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셋째, 하위영역별로 농촌 다문화가족의 자립인식 수준을 비교한 결과, 정보화 영역의 자립수준이 전반적으로 가장 낮았다. 그러나 결혼이민여성들의 정보화 및 컴퓨터 관련 교육요구는 16.98%로써 피부·미용분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2010년 우리나라 가구주 연령대별 PC 보유율이 20대의 경우 98.3%, 30대의 경우 99.6%, 40대의 경우 97.8%이라는 보도기사⁷⁾에 준해 볼 때 대다수가 취학전 또는 학령기 자녀를 둔 농촌 다문화가족의 PC보유율은 81.7%로써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PC를 활용한 정보 습득율이나 이용률은 훨씬 격차가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정보 격차와 불평등이 다문화가족의 문화자본, 사회자본, 그리고 네트워크의 빈곤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다문화가족의 정보화 활용능력을 강화하는 적절한 완충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실례로 PC를 보유하지 못하면서 2세대 자녀를 둔 농촌 다문화가족에게 공공기관에서 사용 연한을 초과한 컴퓨터를 수리하고 업그레이드해서 지원하거나 PC 활용에 관련된 교과목을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교육과정에 개설 및 강화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넷째, 농촌 다문화가족의 생활실태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교육 및 사회적 지원 요구의 차이는 경제적 지원 요구나 정보화 요구 또는 주거환경에 따른 요구와는 달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다문화가족 자녀교육 및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 요구가 계층이나 생활특성을 떠나 보편적으로 내재되는 요구특성임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농촌 다문화가족에 대한 자립지원은 생활특성별, 영역별로 차별적이거나 통합적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본 연구의 결과 및 제언은 농촌 다문화가족을 위한 자립 지원 정책이나 방안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질 것이다.

7) 데일리 중앙 2011. 4. 26일자 보도

한편 연구의 결과로 제시된 지원요구중 주택이나 경제적 지원 정책에 대한 내용은 남편만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 결과로써, 이는 결혼이민여성들이 이들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한 것이며 쌍으로 조사된 부부 모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은 계통추출된 지역에서 선정하였으나 출신국가별로 비례할당하여 표집함으로써 농촌 다문화가족의 출신국가별 구성분포에 따른 대표성을 갖기에 한계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자립의 개념 및 구성영역을 다차원적으로 설정하여 이의 인식 수준과 관련 영역별 지원요구를 처음으로 분석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 참고 문헌 ■

- 고용노동부. (2000). *자활지원사업 질의 회의집*. 과천: 고용노동부.
- 김민정. (2002). 국립재활원 자립생활프로그램 평가. *재활의 샘* 15호 101-127.
- 김정연, 하지선, & 김인숙. (2011). 시설 십대 청소년의 “자립” 척도 개발: 십대 여성 지원 시설 입소 및 이용자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3(2), 23-53.
- 노대명. (2010). OECD사회지표중 자립지표의 분석. *보건복지포럼*(2010.9), 128-138.
- 테일리중앙. (2011). 컴퓨터 보급률도 지역별 ‘부익부 빈익빈’(2011. 4월 26일자).
- 동아일보. (2012). 다문화가족, 농촌 고령화 늦추고 출생률 높여(2012. 1월 3일자).
- 박경숙, & 박능후. (2001). *저소득층 여성가장 생활실태 조사 및 자활 프로그램 개발*. 수원: 경기도 2.
- 보건복지부. (2010).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서울: 보건복지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 사회연구원.
- 양순미. (2001). *농촌가족의 건강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양순미. (2006a).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적응정책의 모색. *한국자치행정연구*. 제5호 111-127.
- 양순미. (2006b).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적응 및 생활실태에 대한 비교분석: 중국, 일본, 필리핀, 이주여 성 부부중심. *농촌사회*, 16(2), 151-179.
- 양순미. (2008). *농촌 다문화가족의 농업 및 사회참여활동 프로그램 개발 연구*. 수원 : 2008농촌진흥청 국립 농업과학원 시험연구 보고서.
- 양순미. (2011). *문화산업사회를 디자인하는 다문화테마사업 가이드 북*. 수원: 농촌진흥청.
- 양순미, & 유영주. (2002). 농촌부부의 배우자에 대한 역할 기대, 역할수행평가, 역할상이성이 결혼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1), 75-91.
- 양순미, & 정현숙(2005). 농촌가족의 건강성에 관한 중단적 비교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0(3), 27-46.
- 오혜경. (1998). 장애인 자립생활 실천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리뷰*, 3, 39-63.
- 유계숙. (1996). 가족데이터의 통계적 산출 및 분석방법에 관한 탐색적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 11-20.
- 이상록. (2007). 중증뇌성마비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

- 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자성. (2011). 정보화마을의 자립운영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경상남도 정보화 마을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3(1), 193-216.
- 이양호. (2009). 새터민 정책 개선에 관한 연구: 경제적 자립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연숙. (1999). 실내디자인 양식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이형하, & 조문탁. (2004). 한국 자활사업의 자활효과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자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0(1), 217-244.
- 임선희. (2010).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동양대학교 정보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최명숙. (2005). 저소득 여성세대주 가정의 자립지원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 최종희. (2010). 사회적 지지가 자활대상자의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타나구치아키히로, & 타케다야스히루. (1999). *자립생활은 즐겁고 구체적으로* 서울: 나눔의 집
- 통계청. (2011). 혼인이혼통계 자료.
- 허태현. (2005). 자활산업 참여자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Hawkins, R. L. (2002), *How Low-Income Single Mothers leave Welfare for self-sufficiency : The role of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human capital, and social capital*. Brandeis University.
- Johnes, K. (1993). *Asylums and After: A Revised History of the Mental Health Service: from the early 18th century to the 1990s*. London: The Athlone Press.
- Gorge, V. & Wilding, P. (1984). *Impact of Social Policy*.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Pearce, D., Brooks, J. & Quttz, J. H.(1997). *The Self-Sufficiency Standard for Pennsylvania-selected family types*. Wider Opportunities for Women. Washington : Inc, Women's Association for Women's Alternatives.

Analysis of the Self-sufficiency's Level and Support Need for it in Rural Multicultural Families

Soon Mi Yang

Divi. of rural environment & Resources of the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in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Abstract

This study aimed at identifying level of self-sufficiency, and support need for it in rural multicultural families. Frist, the level of self-sufficiency in rural multicultural families was the lowest in a information sub-area, whereas it was the highest in a socio-psychological relation sub-area. Second, the chi-square test showed that the level of assistant request for a cost-of-living allowance was high in the multicultural family group received the medical social security(MSS) or not prepared the expenditure for children education or the golden years. Whereas the level of assistant request for the education of marketing or agricultural technology was high in the multicultural family group not received MSS or prepared the expenditure for children education or the golden years. Third, rate of PC ownership in the rural multicultural families was lower than that of national whole. and difference of it according to the living characteristics uch as MS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Fourth, difference in level of assistant request for children education and social dimension according to the living characteristics such as MS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t means that assistant request for children education and social dimension have universality without distinction

the living characteristics such as MSS.

And to conclude, support for self-sufficiency in rural multicultural families should be selective approach with discriminative or integrational viewpoint according to the living characteristics such as MSS or area of self-sufficiency. Findings of this study may be used as a basic material to establish the policy supporting self-sufficiency in rural multicultural families.

key words : Rural, Multicultural Family, Self-sufficiency



Soon Mi Yang is a research worker and specialist at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NAAS) in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RDA) where she has study the rural families since 1995. Her research interests, since 2005, is concentrated on rural multicultural families.
Address:(441-770) Suinro 150, Gwonseon-gu, Suwon-Si, Republic of Korea
e-mail) ysm@korea.kr, phone)82-31-290-0286